구분 유예기간 1.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\* 2.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. 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\* 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같은 법 또는 ｢중소기업 창업지원법｣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 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건설계획기간